



## 수입절편녹용 제조업소 자가품질 허용

- 수입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

최근 식약청에서 개최된 녹용 절편 수입 등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녹용절편을 규격품으로 제조하는 것은 물론 자가 품질검사 역시 제조업소에 맡겨 유통키로 결정해 관련 단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약재 관련단체에 따르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전지 상태의 녹용도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 절편 녹용에 대한 규격품 제조와 자가품질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제조업소 특혜 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5월31일 식약청에서 실시한 회의에서는 절편녹용의 제조 수입은 수입시마다 지정된 한약재 검사기관(식약청 및 의약품시험연구소, 한의학연구원 등 8개기관)에서 시험검사 후 적합품에 한해 통과 제조품목 신고수리된 제조업소에 판매를 맡기며, 녹용절편의 제조(소분) 품목 신고 수리된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으로 제조 유통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또 포장과 유통에서도 효율적인 시험, 특히 회분시험 검사를 위해서는 되도록 소포장이 바람직 하나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와 수요자(한의원 한방병원등의) 입장을 고려해 포장 단위를 75g~3.0kg의 범위로 제한하고,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상중하 등으로 구분 포장

할 수 있으나 이 때 반드시 포장 회분 기준(33.0%)을 표기해 유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절편녹용을 제조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절편녹용에 대한 제조업소 위탁 유통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비규격품 녹용의 유통단속, 제조업소 실사 및 녹용절편 유통품의 수거검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고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무조건 제조업소에만 맡기는 것은 양질의 한약재 유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수입된 녹용을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으로 제조하고 자가품질 검사 실시 후 유통을 허용한 것은 일부분의 샘플채취로 품질을 평가해왔던 관례에 미뤄볼 때 고양이에 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비난했다. **한국양록**

